

일반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| | |
|---------|--|
| 서류제출 기한 | 2022년 04월 23일(토) ~ 04월 29일(금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 |
| 제출방법 | 사전 방문 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접수 |
| 견본주택 위치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-3 (대표번호 : 031-401-1811) |
|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•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점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점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
■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구비 서류 | ○ | |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| 본인 | 당사 견본주택 비치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본인 |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,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) |
| 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.) |
| 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(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)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해당지역 거주자로 당첨시 |
| 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|
| 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세대원 |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|
| | | ○ | 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 | 본인 |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직계존속 |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직계비속 |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 |
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직계 존·비속 |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기록대조일 : 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, 비속은 1년) ※ 직계존속 - 해외에 체류중인(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)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- 만 30세 미만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| |
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/ 직계비속 |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 / 직계존속 |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합니다.)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,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(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 확인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 |
|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| ○ | | 무주택 소명서류 | 해당 주택 |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자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○ | | 당첨사실 소명서류 | 청약자 |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|
|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| ○ 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청약자 |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.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'본인 발급분'에 한합니다.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|
| | ○ | | 위임장 | 청약자 |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|
| | ○ | | 대리인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|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3.31(목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